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504호

발의년월일 : 2020년 9월 9일
발 의 자 : 이재식 의원
찬 성 자 : 오진환, 심광식, 정택진, 이인락, 최재란, 임정옥 의원 (6명)

1. 제안이유

양천구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
나. 어린이놀이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9조).

다.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,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.

라.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.

마.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55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없음.

라. 기타

1) 제정안 : 별 첨

2) 입법예고 : 2020. 9. . ~ 2020. 9. 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어린이놀이터”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 어린이 놀이기구가 실외에 설치된 곳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방향
2. 어린이놀이터 운영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등
3. 놀이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·운영계획 및 참여방법
4. 그 밖에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어린이놀이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어린이놀이터 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및 개선 등의 사항
3.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아동 놀 권리,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아동 놀 권리,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3.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장기불참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놀이문화 활성화사업
2. 놀이활동 분야 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
3. 놀이활동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각종 홍보사업
4.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표창)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, 법인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 법령]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55조의2(주민공동시설)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특성,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.

1. 1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: 세대당 2.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
2. 1,000세대 이상: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
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**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.** 다만,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,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150세대 이상: 경로당, **어린이놀이터**

2. 300세대 이상: 경로당, **어린이놀이터**, 어린이집

3. 500세대 이상: 경로당, **어린이놀이터**, 어린이집, 주민운동시설, 작은도서관

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.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

면적 기준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경로당

가.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

나. 오락·취미활동·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

다. 급수시설·취사시설·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

2. 어린이놀이터

가.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

나.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, 그 밖의 내장재는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

다.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(도로·광장·시설녹지,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)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

3. 어린이집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
나.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

4. 주민운동시설

가.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

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

5. 작은도서관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)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
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서 명 지

번호	의원명	서 명
1		
2		
3		
4		
5		
6		
7		
8		
9		
10		
11		
12		
13		
14		
15		
16		
17		
18		